

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

Philippine Non Tariff Barriers Issue

필리핀,
연구개발 목적의 가공 식품
수입 허가 지침 발표
(공식 관보 게재 15일 후 시행)



필리핀, 연구 및 개발 목적의 가공 식품에 '샘플 전용' 수입허가증 발급 지침 발표

2024년 5월 7일, 필리핀 식품의약청(FDA)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예정된 사전포장 가공식품 제품에 '샘플 전용'으로 FDA 수입 허가 발급 지침([FDA Circular No. 2024-004](#))을 발표함. 이 지침은 공식 관보 게재 후 15일 후에 발효될 예정

1. 배경 : 필리핀 식품규제연구센터(CFRR)에서는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사전포장 가공식품, 대량 식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기 전에 FDA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 해당 수입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음

2. 주요 내용

- 1) 적용 대상 : 연구 개발(관능 평가, 생산 시험, 품질 보증 목적 등)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샘플
- 2) 주요 내용 : 필리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식품을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샘플로서 수입할 경우 FDA를 통해 샘플 전용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함
- 3) 연구용 식품 샘플 적용 범위

적용 가능	적용 불가
[연구개발 목적 식품 수입 적용 가능 대상] ① 식품 제조에 관여하는 식품 수입업체 운영 허가증을 보유한 영업자 ② 유료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식품 거래자 ③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식품 샘플을 수입하는 식품 유통업자/도매업자	① 전시회, 무역 박람회에서의 사용 ② 시장 테스트/상업 시설에서의 전시 ③ 시험 운영 또는 실제 판매를 위한 제품 수입

4) 수입 제품(샘플)의 최대 한도

종류	수입 최대 한도
원재료	50kg 또는 50L
허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	5kg 또는 5L
완제품	이형 상품, 품목 및 청구서당 50kg
식품 보조제	이형 상품당 5kg(캡슐, 분말 또는 정제 형태)

5) 신청 지침

신청 기간	제품 샘플 도착 14일 전까지 신청 필요
제출처	FDAC (이메일: fdac.letters@fda.gov.ph, 제목(필수): CFRR: Import Permit, Company)
평가	사전 평가 및 정식 평가 후, 수입 허가 발급 요건 미충족 시 7일의 시정 기간 이후 불승인 통지서(LOD) 발급됨

6) 필요서류(서류 접수 후 [FDA 키오스크](#)를 통해 신청 상태 확인 가능)

식품 샘플 신청시	- 신청서 또는 의향서(하기 정보 기재) - 발송물에 포함된 각 품목 리스트 - 브랜드 이름 및/또는 제품 이름 - 수량 -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- lot번호(제품식별번호) 또는 샘플링 코드 또는 제품 연구코드 - 공증된 확약서(ANNEX B, 공고 문서 7p에 제시됨) - 분석 증명서 또는 무료 판매 증명서 또는 건강 증명서 - 판매/견적 송장 - 현행 FDA 규정에 규정된 수수료 지불 증명서 - 제조업체/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/수입업자 또는 무역업자/수입업자의 유효한 운영 라이선스 - 고위험 간주 제품 필요시 안전 확인 관련 추가 문서(FDA 판단에 따라) -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 - 항공 운송장(사용 가능한 경우)
-----------	---

7) 수입 인증서 유효 기간: **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(한번만 사용 가능)**

3. 시행일 : **공식 관보 게재 후 15일 후**

출처

필리핀 식품의약품청, [Draft FC on Import Permit](#)

REPUBLIC OF THE PHILIPPINES, FDA Circular No.2024-004

Chemlinked, Philippines Releases Guidelines on the Issuance of Import Permit as "Samples Only" for Processed Food Intended for R&D Purposes, 2024.05.08